

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4-397 호
의 결 연월일	2014. 10. 24. (제 443 회)

의 결  
사 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제출연월일	2014. 10. 20.

# 목 차

I. 규제 심사(안) 개요 .....	1
□ 요 약 .....	1
II. 규제심사안 .....	7
1. 등록의 취소 .....	7
2. 행정처분 .....	14
3. 과태료 .....	21

# I. 규제 심사(안) 개요

##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p>1. 등록의 취소</p> <p>* 강화</p> <p>* 법률 제13조의3</p>	<p>개인투자조합은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차입이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p> <p>[법률]</p> <p>제13조의3(등록의 취소) □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개인투자조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p> <p>⇒(사유) 투자자모집 제한 및 결산서 제출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으나, 이들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행정처분 규정이 미흡</p> <p>* (법령개정내용)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 모집 제한 및 결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p>	비대상	불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li> <li>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li> <li>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li> <li>4.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5. 제13조제7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ol>			
<p>2. 행정처분</p> <p>* 강화</p> <p>* 법률 제28조</p>	<p>중기청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고(변경)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조합결성 요건의 미달, 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p>	<p>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p> <p>⇒ (사유) 현행 행정처분은 조합을 해산하는데 초점, 조합운용에 무한책임이 있</p>	<p>비대상</p>	<p>불가능</p>

	<p>록이 취소되거나 말소,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시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p> <p>[법률]</p> <p>제28조(행정처분) □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li> <li>2.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결성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3. 중소기업창업</li> </ol>	<p>는 업무집행조합원은 불이익이 없어 법 규정의 실효성 담보가 다소 미흡</p> <p>* (법령개정내용)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p>		
--	---	---	--	--

	<p>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 융업자의 등록 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p> <p>4. 제3조의4제2 항을 위반한 경우</p>			
<p>3. 과태료</p> <p>* 강화</p> <p>* 법률 제32조</p>	<p>한국벤처투자조 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행위 제한, 시정명 령 등 행정처 분의 대상이 되거나 결산서 미보고 및 허 위보고인 경우, 그리고 한국벤 처투자조합이 아닌 자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는 과태료를 부과</p> <p>[법률]</p> <p>제32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마찬 가지로 개인투자조합이 시 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p> <p>⇒ (사유) 과태료 부과를 통 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p> <p>* (법령개정내용) 중소기업 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하 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p>	비대상	불가능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의4제2항·3항을 위반한 자</li> <li>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li> <li>3. 제3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li> <li>4. 제31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시행령]</p> <p>제21조(과태료의 부과)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p>			
--	---	--	--	--

	<p>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의4 제2항·3항을 위반한 경우 - 500만원</li> <li>2. 법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 을 위반한 경 우 - 500만원</li> <li>3.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500만 원</li> <li>4.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결산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li> <li>5.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 의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 500만원</li> </ol>			
--	--	--	--	--



## II. 규제심사안

### 1. 등록의 취소

####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개인투자조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유) 투자자모집 제한 및 결산서 제출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으나, 이들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행정처분 규정이 미흡

\* (법령개정내용)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 모집 제한 및 결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제13조제9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한 경우
<신 설>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 관리
	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신 설>	8.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결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중소기업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신 설>	10. 제26조제3항 따른 중소기업청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②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
<신 설>	③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
	조제10항에 따른 자일 경우 그 임직
	원에 대해서도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 2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7626										
	규제사무명	등록의 취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제안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김주식										
4. 근거법령명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h>의견 수렴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이해관계자</td> <td>한국엔젤투자협회 6,590</td> <td>서면</td> <td>행정처분 강화 필요</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한국엔젤투자협회 6,590	서면	행정처분 강화 필요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한국엔젤투자협회 6,590	서면	행정처분 강화 필요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8.01.01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 현행규제내용 개인투자조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차입이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p> <p>[법률]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li> <li>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li> <li>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li> <li>4.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ol>											

	<p>5. 제13조제7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 신설(강화)규제내용 개인투자조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p> <p>=&gt;(사유) 투자자모집 제한 및 결산서 제출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있으나, 이들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행정처분 규정이 미흡</p> <p>* (법령개정내용)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 모집 제한 및 결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p>
<p>10. 규제체계도</p>	<pre> graph TD     A[중기청] -- "운용책임 시정명령, 경고 등 처분 가능" --&gt; B[업무집행조합원]     A -- "등록취소 처분 가능" --&gt; C[개인투자조합]     B -- "자산운용책임 및 조합의 법적대리" --&gt; C     C -- "조합의 위법 사실 인지 및 사실확인" --&gt; A   </pre>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regulatory framework. At the top is the '중기청' (Financial Commission). It has two main arrows pointing downwards: one to '업무집행조합원'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with the text '운용책임 시정명령, 경고 등 처분 가능' (Operational responsibility, order to rectify, warning, etc. possible), and another to '개인투자조합' (Private Investment Fund) with '등록취소 처분 가능'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possible). A horizontal arrow points from '업무집행조합원' to '개인투자조합' with the text '자산운용책임 및 조합의 법적대리' (Asset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legal representative of the fund). A diagonal arrow points from '개인투자조합' back up to '중기청' with the text '조합의 위법 사실 인지 및 사실확인' (Awareness and fact-checking of illegal acts of the fund).</p>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가. 규제의 필요성**

#### **1) 문제정의**

- (현황) 개인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은 사모펀드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범위·운용방식 등을 제한
- (문제점) 법 위반 여부를 적발하고, 위반자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법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이 미흡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의 투자금으로 구성된 투자펀드이며 이를 특정개인(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토록 하고 있어, 운용자가 투자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있으며,
  - 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금을 제공한 개인들에 직접적인 피해볼 우려가 있음
- 특히, 출자자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 비해 정보가 적고, 투자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바,
  - 정부가 조합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토록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1) 규제대안의 검토

**대안없음**(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최소한의 규제임)

##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피규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 법을 위반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음
  - 행정기관 또는 규제기관(유관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은 없음
- (편익)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개인들의 벤처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됨

##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조합 즉 펀드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음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 1) 규제의 적정성

-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투자금으로 구성되어 특정개인(업무집행조합

원)에 의해 운용되는 투자펀드로 펀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 및 행정처분을 적용할 필요

- 창업투자조합의 법 위반시 조합의 등록취소,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한 바,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취소 조항을 추가 설정하는 것 또  
한 적절하다고 판단

## 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시 의견 없음
- 한국엔젤투자협회 의견 조회 결과 개인투자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예 찬성

##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집행 방법) 개인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투자펀드의  
관리 및 행정처분을 하는 담당하는 인력이 4명(사무관 2명,  
주무관2명)으로 규제 집행에 대한 부담 없음

## 2. 행정처분

###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유) 현행 행정처분은 조합을 해산하는데 초점, 조합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은 불이익이 없어 법규정의 실효성 담보가 다소 미흡

\* (법령개정내용)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행정처분)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처분)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투자한 경우
<신설>	5.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



	<p>라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p>
<신 설>	<p>③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정명령</li> <li>2. 경고</li> <li>3. 주의</li> </ol>
<신 설>	<p>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임요구</li> <li>2. 경고</li> <li>3. 주의</li> </ol>

## ②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7628			
	규제사무명	행정처분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명령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제안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김주식			
4. 근거법령명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95개사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의견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8.01.01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 현행규제내용</p> <p>중기청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고(변경)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조합결성요건의 미달, 창투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 업무집행자 200만원의 행위제한시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p> <p>[법률]</p> <p>제28조(행정처분) □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li> <li>제4조의3제3항에 따른 결성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li> </ol>				

	<p>경우</p> <p>4. 제3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p> <p>- 신설(강화)규제내용</p> <p>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p> <p>⇒ (사유) 현행 행정처분은 조합을 해산하는데 초점, 조합운용에 무한책임이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은 불이익이 없어 법 규정의 실효성 담보가 다소 미흡</p> <p>* (법령개정내용)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p>
<p>10. 규제체계도</p>	<pre> graph TD     A[중기청] -- "운용책임 시정명령, 경고 등 처분 가능" --&gt; B[업무집행조합원 (임직원)]     A -- "지원중지 (펀드해산) 조치 가능" --&gt; C[한국벤처투자조합]     B -- "자산운용책임 및 조합의 법적대리" --&gt; C     C -- "조합의 위법 사실 인지 및 사실확인" --&gt; A   </pre>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regulatory framework involving three entities: the Financial Commission (중기청), the Business Management Combination (Employees) (업무집행조합원 (임직원)), and the Venture Investment Combination (한국벤처투자조합). The Financial Commission has operational responsibility and can issue orders or warnings to the Business Management Combination. It can also suspend support (including fund liquidation) for the Venture Investment Combination. The Business Management Combination is responsible for asset management and acts 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Venture Investment Combination. The Venture Investment Combination reports illegal facts back to the Financial Commission for confirmation.</p>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가. 규제의 필요성**

#### **1) 문제정의**

- (현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은 사모펀드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범위·운용방식 등을 제한
- (문제점) 법 위반 여부를 적발하고, 위반자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검사 및 행정처분 규정이 미흡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펀드로서,
  - 투자금을 제공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음
- 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금을 제공한 개인들에 직접적인 피해볼 우려가 있음에 따라,
  - 법을 운용하는 정부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토록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집행할 필요

###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1) 규제대안의 검토**

대안없음(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최소한의 규제임)

##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 (비용) 비용부담 없음

- 피규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 旣 시행 중인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경상적 비용부담은 없음
- 행정기관 또는 규제기관(유관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없음

### ○ (편익)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민간의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신설)

- 중소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으로 중소기업과 관계 없음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 1) 규제의 적정성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벤처펀드인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법 위반시 조합의 등록취소,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한 바,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및 전자 공청회 시 의견 없음

##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집행 방법)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투자펀드의 관리 및 행정처분을 하는 담당하는 인력이 4명(사무관 2명, 주무관2명)으로 규제 집행 여력 있음

### 3. 과태료

####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

\* (법령개정내용) 중소기업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의3 및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4. ( 생 략 )	3.~4. ( 현행과 같음 )

## ②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7633												
	규제사무명	과태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제안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김주식												
4. 근거법령명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h>의견 수렴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이해관계자</td> <td>한국엔젤 투자협회</td> <td>6,590</td> <td>서면 의견 조회</td> <td>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동의</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한국엔젤 투자협회	6,590	서면 의견 조회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동의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이해관계자	한국엔젤 투자협회	6,590	서면 의견 조회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동의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8.01.01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p>- 현행규제내용</p> <p>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행위제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결산서 미보고 및 허위보고인 경우,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p> <p>[법률]</p> <p>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조의4제2항·3항을 위반한 자</li> <li>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li> <li>제3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li> <li>제31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p> <p>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의4제2항·3항을 위반한 경우 - 500만원</li> <li>2. 법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만원</li> <li>3.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500만원</li> <li>4.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li> <li>5.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 500만원</li> </ol> <p>- 신설(강화)규제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p> <p>⇒ (사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p> <p>* (법령개정내용) 중소기업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p>
10. 규제체계도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regulatory framework with three main entities in boxes: '중기청' (KIC) at the top, '업무집행조합원' (Business Execution Committee Members) at the bottom left, and '개인투자조합' (Private Investment Funds) at the bottom righ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double-headed arrow connects '중기청' and '업무집행조합원'. The text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Possible fine of up to 500,000 KRW) is placed above the arrow pointing from KIC to the members, and '중기청 시정명령 위반' (Violation of KIC order) is placed below the arrow pointing from the members to KIC.</li> <li>A single-headed arrow points from '업무집행조합원' to '개인투자조합'. The text '자신은용책임 및 조합의 법적대리' (Self-responsibility and legal representative of the fund) is placed below this arrow.</li> </ul>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가. 규제의 필요성

#### 1) 문제정의

- (현황)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추진 중임
- (문제점)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시정명령 규정의 실효성 담보가 어려움
  -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가능함

####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를 추진 중임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조합원 및 임직원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1) 규제대안의 검토

**대안없음**(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최소한의 규제임)

##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비용부담 없음
  - 피규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 旣 시행 중인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경상적 비용부담은 없음
  - 행정기관 또는 규제기관(유관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 한국벤처투자함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없음
- (편익) 개인투자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민간의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신설)

-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으로 중소기업과 관계 없음

##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 1) 규제의 적정성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하는 조합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도 금번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시 의견 없음
- 한국엔젤투자협회 의견 조희 결과 개인투자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찬성

##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집행 방법) 개인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투자펀드의 관리 및 행정처분을 하는 담당하는 인력이 4명(사무관 2명, 주무관2명)으로 규제 집행에 대한 부담 없음